

# 老人保健

## 편집부

### 1. 서 론

근래에 와서 노인보건에 대한 關心이 많아진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에 대한 政府의 政策樹立과 事業推進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當然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 學者나 이 方面에 關心이 있는 人士들을 통해서 機會가 있을 때마다 強調되고 있으나 保健社會部의 機構나 組織을 보면 뚜렷하게 老人保健을 맡아 볼 部署가 分明치 않다. 그러나 社團法人 韓國成人病豫防協會가 1978. 6 以來 發足되어 老人保健의 一環으로 成人病의豫防 및 治療에 關한 技術開發 및 普及, 指導啓蒙, 研究調查 및 技術評價, 醫藥品의 研究開發, 그리고 成人病診療를 위한 專門醫療機關의 設置運營 等을 내걸고 事業을 전개하고 있다.

最近 元老 保健家를 中心으로 組織과 서울保健研究會에서 “2000年代의 保健醫療”라는 保健白書에서는 老人保健에 관해서 정리하여 發表된 바가 있다.

### 2. 保健白書의 發表內容(抄)

#### (1) 老人保健 現況

가. 老人에 대한 社會福祉事業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老齡者에만 국한된 獨

자적 복지사업은 施行되고 있지 않다. 다만 1961年 제정된 生活保護法의 일환으로 生活能力이 없는 65세 이상의 老弱者에 대한 保護가 실시되고 있다. 生活保護法의 内容으로는 生計保護, 醫療保護, 分娩保護 및 葬祭保護가 있고 보호장소에 따라서는 居宅保護와 收容保護로 구분되어 있다. 수용보호시설인 양로원은 1978年 現在 총 46개소이며, 이中 90%가 宗敎團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收容現況은 보호대상자의 33.6%인 2,756명이 수용보호중에 있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制定 實施되고 있는 年金制度에는 공무원, 군인 및 私立學校 教職員을 대상으로 하는 年金法이 있다. 1983年부터는 國民福祉年金法이 실시될 展望이어서 보다 확장된 의미의 노령 연금제도가 體系化되리라 期待되고 있다.

#### 나. 老人에 대한 醫療保障 現況

生活保護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醫療保護事業에는 生計能力이 없는 65세 이상의老人과 社會福祉施設에 수용되고 있는 모든 老人們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상자는 1978年 現在 65세 이상 人口의 13.5%인 184,000名에 불과하다.

1978年 現在 全人口의 25%가 加入되고 있는 醫療保險事業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老年人口는 65세 이상 人口의 9.5% 정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1978年 現在 65세 이상 人口의 약 23% 정도가 醫療保障制度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表 1 老人에 대한 醫療保障現況

의료보장 종류	연령군	인구(千名)	대상자(千名)	%
의료보호	66세	1,361	184	13.5
의료보험	65세	3,207	304	9.5

수 있다(表 1).

#### 다. 민간단체의 활동현황

최근에 와서 老後의 餘暇活用과 親睦圖謀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代表의인 老人團體로는 大韓老人會, 樂山會, 樂水會, 大韓三樂會 등이 있다. 이中 大韓老人會는 老人亭, 老人學校 등을 운영하고 있고 소요경비는 自體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老人們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 老人亭은 1978년 현재 全國에 3,957個所가 있으나 전통과 시설이 빈약한 상태에 있다.

1950年부터 시작된 老人學校는 1978년 현재 全國에 250여개소가 設立되어 2만여명의 노인학생들을 收容하고 있다. 老人學校의 修學期間은 3개월~1년 정도이고 교육내용은 歷史, 哲學, 倫理, 文學, 健康管理 등의 강좌에 레크리에이션, 產業視察, 觀光旅行 등 아주 다양하다.

한편 老人問題를 연구하고 解決方案을 찾으려는 自發的인 연구단체나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즉 韓國老人問題研究所, 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韓國社會事業大學 附設 老人福祉研究所, 同德女大 附設 老人保健福祉研究所, 韓國老年學會 등이 創設되었다. 최근에는 老人을 위한 敬老病院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 산발적으로 경로잔치, 老人體育大會 등이 여러 단체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있으며 매스콤에서도 한층 더 老人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련기사를 꾸준히 다루고 있다.

#### (2) 2000년대의 노인문제 대책

앞으로 우리의 노인문제에 대한 對策은 전통적 가족개념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東洋的인 “孝”思想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社會教育의 인面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老人們의 疏外感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老人們의 현실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方案 즉 停年制의 延長이나 元老에 대한 分野別 諮問制度의 導入 등을 實現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老人에 대한 사회학적 대책을樹立한 후에 다음과 같은 保健, 福祉對策을 수립·실시해야 할 것이다.

#### 가. 政府의 積極的인 對策

政府는 앞으로 漸次 크게 社會問題化될 老人問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문제를 綜合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老人福祉를 위한 관계법령을 정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充分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필요한 資金의 支援을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 나. 公共收容施設의 擴張 및 改善

現在亟히 모자라는 公共收容施設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켜 모든 無依托老人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施設面에서도 수용된 노인들이 快適하고 안락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娛樂과 餘暇善用을 위한 프로그램의 開發

老人들에 대해서 老年的寂寂함을 달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開發되어야 한다. 이것은 既存의 老人會組織을 중심으로 하는 事業計劃과 社會敎育團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事業計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노인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敎育內容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라. 醫療保障

無病長壽에 따른 老人們의 만성 退行性疾患 및 생활능력이 없는老人들에 대한 醫療保障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老人들에 대한 전강판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既存 보건소 조직을 활용하는 方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老後의 의료보장은 어제의 산업 역군이었던老人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네가지 對策 이외에도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老人들이 현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社會的役割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老人들에게 업무와 직종을

<11p.에 繼續>

급성 신장질환이 만성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처음부터 만성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대개 “만성네프로제” “만성사구체성 신장염” 그리고 두가지 합병형인 “만성 네프로제 사구체 성 신장염”등의 세가지 형으로 나타나며 고도의 부종, 단백뇨, 소변감소, 심장비대, 고혈압, 두통의 증세가 혼자하며 신장이 위축되어 “위축신”(萎縮腎)으로 사망하게 된다 만성으로 이행하면 예후가 불량하고 치유가 잘 안된다.

## 예방대책

치료는 어렵고 예방은 쉽다.

노검사 : 1년에 1~2회 정도 소변검사를 해서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노검사를 실시함이 바람직 하다. 보건문화의 발달에 따른 전염성질병, 결핵·기생충 등의 질병은 격감되고 그에 신장염·심장병·고혈압 등의 증가가 혼자하다.

문교부에서도 학교신체검사규칙(1969. 7. 19 文教部令第446호 개정)을 개정하여 제 4조에 신장

신장검사를 신체검사 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서는 10년전부터 소변검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1. 식생활관리 : 식염섭취를 제한하고 1일 염섭취량 10g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단백이 검출되면 철저한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전문에게 조기 치료를 받아 중증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구강염, 편도선염 조기치료 : 편도선염, 구강염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한다.

3. 임신중독증예방 : 임신부는 태아 또는 태아부속기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배설이 잘 안되면 임신중독증이 생기며 임신성 신장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악화하면 자간 노독증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임신중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변의 단백검사를 실시해서 조기 발견하여야 한다.

4. 영양섭취 : 신장염, 임신중독증 등이 대개 영양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많이하여 체력증강을 하여야 한다.

<37p.에서 繼續>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人間은 태어나면 성장해서 후에는 老人이 되고 결국 死亡하게 된다. 따라서 老人問題는 현재의 老人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自身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必然的인 事實을 인정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分野에서 각者が 할 수 있는데까지 미리 對策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老後에自身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짚었을때부터 확실히自身的 ability

을 개발하여 老後에도自身이 社會에서 필요한存在가 되도록 해서 老後의 問題를 各者와 社會가 분담해 나갈 수 있는 風土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草案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비엔나와 뉴욕에 있는 民間機構(NDO) 위원회와 各國政府 및 走十字聯盟도 국제행동강영 草案作成에 참여하는同時 UN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